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보일	2024.1.26.(금)		
구 분	이 사	감 사	계
임원정수	9명	2명	11명
재적임원	8명	2명	10명
참 석	8명	2명	10명
불 참	0명	0명	0명

1. 일 시 : 2024.2.6.(화) 14:00 ~ 20:30

2. 장 소 :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Zoom을 통한 비대면 회의 병행함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 김이수, 이사 김선아, 이사 임동윤, 이사 신윤숙, 이사 이근우, 이사 박상규, 이사 정병준, 이사 조성철 (이상 8명)

- 감사 : 감사 김정호, 감사 이현필 (이상 2명)

- 불참 임원

없 음

4. 배석 현황

- 법 인 사 무 처 : 사무처장 정세종, 법인팀장 겸 기획감사팀장 조은정, 사업운영팀장 겸 안전관리팀장 정권철

(법인팀 윤진혁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배석함)

- 조 선 대 학 교 : 총장 김춘성, 기획처장 권구락, 교무처장 황석승, 대외협력처장 김현우, 재정예산팀장 채수학, 장학팀장 류수자

- 조 선 대 학 교 병 원 : 병원장직무대리 임동훈, 연구지원팀장 하정민, 총무부장 박민수, 기획팀장 서훈, 기획팀원 이철민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 병원장 이난영, 총무부장 김상수, 총무팀원 김문수
- 조선이공대학교 : 총장 조순계, 기획처장 문인섭, 교무처장 이응재, 기획예산팀장 손용준, 교무팀장 박정철
- 조선간호대학교 : 총장 박명희, 기획산학처장 위성욱, 기획산학팀장 김상일, 교학팀장 박근홍
- 중·고등학교 : 부속고등학교 교장 천일석, 여자고등학교 교장 봉필동, 부속중학교 교장 김연희, 여자중학교 교장 김종채, 부속고등학교 행정실장 장홍철,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성근, 부속중학교 행정실장 한강, 여자중학교 행정실장 노정아

5. 심의·의결 안건

- (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
- (3)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
- (5)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
- (7)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
- (9)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대학통합(안) 승인의 건
- (10)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 (11) 조선대학교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 참여(안)
- (12) 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 (13)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14)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 (15)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 (16)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
- (17)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규정 개정(안)
- (18)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
- (19)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외래 일반미수금(진료비) 대손상각 처리(안)

- (20)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 (21)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22)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
- (23)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 (24)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 (25)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26)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임용(안)
- (27)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안)
- (28)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규정 개정(안)
- (29)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30)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안)
- (31)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6. 보고사항

- (1) 호남권역재활병원 현안 보고



7. 회의 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정세종 사무처장이 성원을 보고(이사 8명, 감사 2명 출석)하자, 김이수 이사장이 이를 확인하고 「정관」 제32조(이사회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개회를 선언함

■ **전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 정세종 사무처장이 전차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김이수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 없음을 확인함

보고사항 1. 호남권역재활병원 현안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호남권역재활병원 현안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문경래 병원장이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은 2023년도 본 예산액 16,314,729천원보다 142,756천원 증액된 16,457,48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024년도 자금예산은 2023년도 1차 추경액 16,457,485천원보다 83,488천원 감액된 16,373,998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 보고함

논의사항 :

- ① 임동윤 이사가 적자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71%, 관리비 비율이 24%인 것은 경영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함
- ② 문경래 병원장이 인건비 상승률은 4%, 의료수익 증가율은 2%로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는 재활 의료수가가 원가의 80%라는 점과 재활병원의 임금이 호봉제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한 것이라고 함. 공공어린이재활센터가 올해 운영을 개시하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함
- ③ 임동윤 이사가 의료수가 상승률에 대해 질의하고 1.9% 인상했다는 답변을 청취함.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가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자 문경래 병원장이 과거에 비해 성인 재활병원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소아 재활쪽으로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환자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답변함
- ④ 김정호 감사가 광주광역시 내 요양병원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시립 제2요양병원의 경쟁력이 저하되었고,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워 수탁자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을 언급하며,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과 달리 구조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는지 질의하자, 문경래 병원장이 재활병원은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에 비해서는 수가가 높고 권역 재활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수하게 수가를 더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함

결의 사항 : 호남권역재활병원 현안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1호 의안.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3학년도 학교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천일석 교장이 제1회 추경액 9,044,776천원보다 49,160천원 감액된 8,995,616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8,995,616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2호 의안.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천일석 교장이 전년도 예산액 6,984,535천원보다 460,734천원 증액된 7,445,269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7,445,269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3호 의안.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3학년도 학교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봉필동 교장이 제1회 추경액 8,539,349천원보다 1,217,464천원 증액된 9,756,813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9,756,813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4호 의안.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 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봉필동 교장이 전년도 예산액 7,072,740천원보다 516,227천원 증액된 7,588,967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7,588,967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5호 의안.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연희 교장이 제1회 추경액 5,355,063천원보다 941,145천원 증액된 6,296,208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6,296,208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6호 의안.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연희 교장이 전년도 예산액 3,556,193천원보다 983,460천원 증액된 4,539,653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4,539,653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7호 의안.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종채 교장이 제1회 추경액 4,011,361천원보다 50,349천원 감액된 3,961,012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3,961,012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8호 의안.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종채 교장이 전년도 예산액 3,222,327천원보다 481,822천원 증액된 3,704,149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3,704,149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중·고등학교 기타 논의사항 :

- ① 김선아 이사가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와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가 각각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투입되는 시설 공사비가 상당해 보인다고 함. 두 학교의 통합을 통해 시설 공사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질의하자 김종채 교장이 동구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를 하다가 최근 학교 주변에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생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함. 학생이 느는 추세에서 산하 중학교 간 통합을 좀 더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함. 봉필동 교장이 최근 중학교의 공사비가 급증한 것은 통폐합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지원이 부족했던 점이 그 이유이며, 그로 인해 낙후된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첨언함
- ② 이근우 이사가 현재 연 출생아가 25만명 내외로 앞으로 중·고등학교 입학 자원이 감

소하는 것은 예고된 일이며 통폐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하자, 봉필동 교장과 김종채 교장이 통폐합을 위해서는 학부모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학부모들이 생활지도 등의 이유로 단일 성별 학교를 선호하는 추세가 있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함

- ③ 박상규 이사가 남녀공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업성적이 저조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며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남녀공학 학교의 상위 30등 이내 성별 분포도 등의 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함
- ④ 천일석 교장이 사립중학교들이 남녀공학이 아닌 단일 성별 학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성적 때문만이 아니라고 답변함.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의 교육의 방향과 목표는 큰 틀에 있어서는 같을 수 있지만 교육 활동이나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함
- ⑤ 조성철 이사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중학교 간 통폐합에 대해 교육청의 지원책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통폐합에 대한 지원책을 상세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함. 지원책이 있다면 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폐합을 고려할 수 있으며, 법인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⑥ 박상규 이사가 남녀공학이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목적이나 교육 목표도 있을 수 있어 통폐합 사유로 단일 성별 학교만의 교육 특색을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함. 단일 성별 학교로 특화 방안을 모색한다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당위성을 입증할 것을 당부함

17호 의안. 조선대학교병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병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가 직제개편(의생명연구원 신설)에 따라 의생명연구원장을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리업무수당 지

급 대상 보직명을 일부 변경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추가 보고사항 : 하정민 연구지원팀장이 의생명연구원과 의학연구원의 기능 중복 및 조직 통합에 관해 추가 보고함

추가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 사항 :

- ① 임동윤 이사가 의생명연구원에서 임상 의학 연구를 하는데는 유전자 조작(molecular work) 등 기초의학 분야에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여 상호간 협업이 필수적으로 보임에도 두 연구원 간의 통합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 대해 아쉬움을 표함
- ② 하정민 연구지원팀장이 현재 산학협력단 직제 하에 있는 의학연구원의 경우 의과대학 학술지를 편찬하는 업무를 주임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도 의학연구원을 거치지 않고 별개로 기초의학 교수와의 협업을 하고 있다고 발언함
- ③ 신윤숙 이사가 의생명연구원 운영을 위해 연구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하정민 연구지원팀장이 의생명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조직이 아닌 연구자의 연구 방향 설정 및 행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다수 필요하지는 않으며 경험 많은 Ph.D.(박사) 출신의 연구원을 1명 채용하여 팀장급의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답변함
- ④ 임동윤 이사가 두 연구원의 통합운영을 위해 서울대학교의 모델을 언급하며 보고자료에 들어있는 6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대학 사례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함
- ⑤ 조성철 이사가 의학연구원과 의생명연구원이 함께 국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상호간의 시너지를 낼 것을 제안함

16호 의안.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가 2023학년도 제2회 추경액 370,058,945천원보다 32,168,082천원 증액된 402,227,027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이 호남권역감염병원 착공 일정을 질의하자 현재 전기, 소방, 통신 분야는 입찰이 완료된 상태이며 건설 부분이 현재 입찰 진행 중이라고 답변함. 착공은 4월 예정이라고 함
- ② 김이수 이사장이 의료수입 중 입원수입 예산 산출을 위해 1일 평균 환자수 650명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가 코로나병동으로 활용하던 75병상 중 음압병동 5개를 제외하고 전부 일반 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1일 평균 입원환자수도 전년 대비 15명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650명으로 산출했다고 답변함
- ③ 김이수 이사장이 발전기금 수입 예산 12억의 용도에 대해 질의하자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가 신축 발전기금으로 사용 예정이며 병원을 방문하는 지역사회 시민들에게도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금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함
- ④ 김이수 이사장이 3차 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인하 (30%에서 15%로 변경) 등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변화가 병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하자, 서훈 기획팀장이 간호등급 가산제의 간호등급이 S등급이 신설됨으로써 간호등급가산제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60억 ~ 70억으로 예상되고 종별 가산을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30억으로 예상되어, 이를 종합하면 의료정책 변화로 인해 의료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금액은 3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답변함
- ⑤ 김이수 이사장이 새병원 신축 설계 예산의 반영 여부를 질의하자 새병원 신축 설계 예산은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에 설계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 ⑥ 조성철 이사가 외래환자가 전년 대비 일 평균 100명에서 180명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외래수입 예산 산출 근거를 작성하였는데 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자 이철민 기획팀원이 신규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암 질환 환자의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함. 조성철 이사가 내실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환자 증가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주문함
- ⑦ 조성철 이사가 외래수입 증가를 위해 더 많은 외래 환자를 유치하여야 하고 이는 진료 시간과 필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진료 시간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자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가 외래 진료 공백을 위해 외래 진료일을 피해서 휴가를 사용하는 임상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함. 조성철 이사가 응급실 운영 개선 및 진료 시간 확보 등의 경영 혁신 노력을 통해 병원 신축 관련 재원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⑧ 신윤숙 이사가 병원의 장례식장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익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질의하자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가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많은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임을 언급함. 이어 민간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는페이백 구조와 최저임금을 이용한 인건비 절약, 환자당 리베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함. 신윤숙 이사는 장례식장 임대를 고려한 바 있는지 질의하자,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가 임대 운영시 병원 브랜드 가치 손실과 그에 따른 영업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함
- ⑨ 이현필 감사가 병원이 주 수입이 입원환자 수입과 외래환자 수입인데 의대 정원 문제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에 대해 질의하자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가 정부의 2천 명 증원 계획을 고려하여 전공의 공백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함
- ⑩ 임동윤 이사가 의료수입 증가는 의료수가 자연 상승의 비중이 커 환자 유입을 통한 수입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는 우려와 함께 관리비 상승, 검진센터 활성화와 의료 분쟁 비용 절감, 병원 신축을 대비한 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 ⑪ 조성철 이사가 새병원 건립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과 경사면 입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장례식장을 검진센터로 활용하고 환자 편의성 및 수익 창출면을 고려해 대학 정문 인근 평지에 병원 건립을 고려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발언함. 또한 비용 등의 문제로 시급한 부분부터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⑫ 김이수 이사장이 검진센터가 새롭게 단장된 것에 대해 운영 면에서 성과가 있는지 질의하자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가 검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병원 간의 검진센터의 크기와 수익, 의료 인력 등 검진 구조에서의 차이를 설명함. 검진 공간을 늘려 환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을 밝히며 검진센터의 공간 구조와 모델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⑬ 김선아 이사가 새병원 신축을 위해 의성관이 폐쇄될 경우 대체 공간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이에 대해 임동훈 병원장직무대리는 권역 감염감염병원이 완공되면 일부 병동을 그곳으로 이전하여 확보된 공간과 병원 내 기타 유휴 공간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함.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환자실을 2인 1실 또는 3인 1실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근의 LH 아파트나 근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 월세 지원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추가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402,227,027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18호 의안.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이난영 병원장이 2023학년도 제2회 추경액 25,716,833천원보다 860,577천원 증액된 26,577,410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이난영 병원장이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김이수 이사장이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언급함
- ② 임동윤 이사가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난영 병원장은 이월자금은 병원 경상수지 차액의 누적분으로 증축공사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이어 증축이 보류됨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의 보수 차원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10억으로 추정되는 공사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6,577,410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19호 의안.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외래 일반미수금(진료비) 대손상각 처리(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외래 일반미수금(진료비) 대손상각 처리(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이난영 병원장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와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2항에 근거하여 총 9건, 709,040원의 진료비 미수금 대손상각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대손 처리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외래 일반미수금(진료비) 대손상각 처리(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외래 일반미수금(진료비) 대손상각 처리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김이수 이사장이 16시 40분에 정회를 선언함>

<김이수 이사장이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함>

20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손용준 기획예산팀장이 2023학년도 제2회 추경액 28,348,242천원보다 114,975천원 감액된 28,233,267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이 신입생 총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자 조순계 총장이 등록금수입 예산을 신입생 총원을 85%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신입생 총원율이 80% 내외라고 보고함. 85% 이상 총원을 목표로 하여 등록금수입을 충당하겠다고 답변함
- ② 김선아 이사가 복합문화관 건축비에 대해 질의하자, 조순계 총장이 건축 지연에 따라 건축비가 초기 예상 금액을 상회하고 있다고 답변함. 복합문화관 건축은 동창회와 대학이 50대 50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추가 설명함
- ③ 임동윤 이사가 적립금 보유액에 대해 질의하자 손용준 기획예산팀장이 2023학년도 말 적립금을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학년도에 추가로 적립한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함

기타 논의사항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선정 추진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선이공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간 통합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조순계 총장이 조선대학교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한다면 학내 제단위와 내용을 공유하여 논의하겠다고 답변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

회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8,233,267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21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손용준 기획예산팀장이 제4조(교직원의 봉급), 제13조(직급보조비), 제14조(가족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 규정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를 반영하여 교원 봉급 및 직원 봉급 인상분(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교직원 가족수당 및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분(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을 반영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조선이공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 조선대학교 간 2023학년도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 사항에서의 차이점을 논의함 (교원 연구보조비 및 성과연봉 인상, 학과장 및 학부장의 일반대학원 주임교수 겸직수당 지급, 4급 이상 직원과 주요 보직 교원에 대한 인상 동결 등)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2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이용재 교무처장이 「교원 채용 규정」에 의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40조(임용)에 따라 신규임용 제청하고 2024.2.29.자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 1명을 면직임용 제

청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신규 임용 : 자동화시스템(공학)과 조교수 정운진, 사회복지과 조교수 김경숙
- 면직 임용 :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이재득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9호 의안.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대학통합(안) 승인의 건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대학통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권구락 기획처장이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 간 대학통합 추진에 따라 대학통합의 필요성 및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대학통합 주요 내용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자 한다며 추진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주요 내용 :

1. 통합대학은 조선대학교, 통합되는 대학은 조선간호대학교로 한다.
2. 통합 후 조선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승격한다.
3. 통합 전 학생의 신분, 학적, 졸업 등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한다.
4. 통합되는 조선간호대학교의 교직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5. 통합 후 간호대학을 현 조선간호대학교 건물로 배치한다.
6. 양 대학은 세부 협약체결을 위해 본부 간 지속적 통합 관련 협의 진행 및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이 계속해서 세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협의들에 대해 질의하자, 권구락 기획처장이 교직원 인사 부분, 학생 학적, 등록금 차등 납부 등의 문제가 세부적으로 협의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 ② 신윤숙 이사가 언제부터 학생을 통합하여 모집할 예정인지 질의하자 권구락 기획처장이 현재 조선간호대학교가 대학혁신사업과 증축공사를 진행 중인 관계로 2027학년도부터 통합하여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통합 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여 글로벌대학30 신청서에 통합 추진 절차 진행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추가 답변함
- ③ 정세종 사무처장이 통합 이후 조선대학교 간호학과와 조선간호대학교가 각각 기존 인사 규정을 해당 교직원에게 적용하고 통합 이후에 신규 채용된 교직원부터 조선대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자 권구락 기획처장이 통합 승인 이후 채용된 교직원은 조선대학교의 인사 규정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며, 기존 간호대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대학교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따를 경우 조선대학교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선간호대의 보수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 이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 설명함. 박상규 이사가 취업을 주요 교육 목적으로 두고 있는 전문대 교원의 경우 연구 업적을 통해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감안하여 협의할 것을 당부함
- ④ 신윤숙 이사가 통합 승인 이후 교원 신규 채용을 위해 두 통합 당사자가 회의를 통해 신규 채용할 과목 및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자 권구락 기획처장이 통합 추진 과정 중이라도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교육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팀티칭 등의 교수법 도입, 조선간호대학교의 시설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
- ⑤ 박상규 이사가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가 통합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한을 정하는 것이며 그 시한 내에 협의를 마무리하여야 함을 강조함. 신분상 문제와 봉급 체계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세부 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함
- ⑥ 권구락 기획처장이 통합(안)의 3번 항목은 통합 전의 학적 체계를 통합 이후에도 유

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합의이며 통합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이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학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2027년부터 통합된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며, 통합 이후에도 2027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기준의 학적을 유지하여 통합된 학교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 기준 학적으로 졸업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임)

김이수 이사장과 박상규 이사가 입학 기준 학적 유지와 일원화된 등록금 납부 등에 대해 해당 내용을 좀 더 검토하여 명확화할 것을 당부함

- ⑦ 임동운 이사가 통합에 대한 동창회, 학생, 교수 등 구성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통합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원 동의 절차 및 이외의 통합 절차를 빠르게 완수할 것을 당부함
- ⑧ 김이수 이사장이 앞으로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을 것이므로 정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다룰 것을 당부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대학통합(안) 승인의 건은 출석이사 2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10호 의안.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권구락 기획처장이 2023학년도 제2회 추경액 248,866,416천원보다 6,203,845천원 감액된 242,662,571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이 예산상으로 적립금 36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감소 사유와 적립금의 원상회복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채수학 재정예산팀장이 적립금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과 치과대학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산 편성으로 인한 것

이라고 답변함. 2023학년도 결산이 완료되면 예산 불용액으로 인해 50억에서 60억 사이의 기타이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이월금 발생분을 2024학년도 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에 반영하면 원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함

- ② 김이수 이사장이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이 확정되었지만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자 김춘성 총장이 예산(안)에 등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추가경정자금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학부 등록금 4.9% 인상으로 60억의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확보된 예산의 63.5%는 교내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급받지 못한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금을 보전하는데 사용되며 나머지 36.5%는 전액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을 설명함
- ③ 신윤숙 이사가 불용액 규모가 큰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며 균형 예산을 맞추지 않는 관행에 대해 지적하자, 채수학 재정예산팀장이 국책 사업 중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기준이 완화된 인건비 등의 교비회계 예산을 국고사업비 예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불용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러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함. 균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이라는 비통상적인 지출에 기한 것임을 추가 설명함
- ④ 채수학 재정예산팀장이 산하기관과 전입금총액과 전출금총액을 대조하는 중 대학의 부속병원전입금 예산이 5억원 과대 계상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세입 부에 부속병원전입금 예산을 5억원 감액하고 일반기부금수입을 5억원 증액하겠다고 하며 자금예산(안)의 수정을 요청함
- ⑤ 이근우 이사가 발전기금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교비회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의하자 채수학 재정예산팀장이 대학으로 기부금이 들어오면 건축 및 장학 등의 목적에 따라 적립되고 사용됨을 설명함
- ⑥ 김선아 이사가 학술연구 전자정보 구독료는 어떤 예산 항목으로 집행하는지 질의하자 채수학 재정예산팀장이 중앙도서관 전자저널 구독 비용 중 90% 정도를 연구 지원 명목으로 산학협력단 간접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비예산 집행액이 크게 감소했음을 설명함

- ⑦ 신윤숙 이사가 난방비, 전기·수도료 등의 관리비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그린 에너지 도입과 ESG 경영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김춘성 총장은 태양열 판넬 설치에 대한 고려를 했지만, 경제성 문제와 판넬의 고장 등의 우려로 인해 현재는 스마트 스위치 설치 등 다른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고려 중임을 설명함
- ⑧ 신윤숙 이사가 교내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종이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전체적으로 공동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안을 하자 김춘성 총장이 현재 A4 용지 및 정수기에 대한 단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⑨ 임동윤 이사가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등록금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대학 자체 수입으로는 경영 상태가 어려움을 언급함. 추가적으로 대학원 등록금 인상보다는 대학원 등록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함
- ⑩ 임동윤 이사가 생활관의 운영 수입 대비 청소용역비 등의 유지관리비 비율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을 요청함. 또한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하는 장애의무고용분담금이 연 2억 3천만원으로 장애인 채용을 통해 해당 분담금을 경감할 것을 제안하자 정권철 사업운영팀장이 업무 효율을 고려한 장애인 채용과 분담금 납부 사이의 균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42,662,571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수정하여 가결함

11호 의안. 조선대학교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 참여(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 참여(안) 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권구락 기획처장이 2024년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개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업무협력 협약방식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국가

장학금Ⅱ유형 사업 참여를 이사회 심의·의결 이후 신청하고자 한다며 안건 상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류수자 장학팀장이 학부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 중 참여가 불가능한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을 제외하고 「신·편입생 지원」, 「지역인재 장학금」에 대해 참여 신청하고자 한다고 부연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 참여(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12호 의안. 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권구락 기획처장이 교수노동조합과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약에서 기본급 1.7% 인상(2024년 1월부터 적용), 교육중심교원의 재임용 횟수에 따른 기본연봉 테이블 신설(2024년 1월부터 적용), 가족수당 월 10,000원 인상(2023년 9월부터 적용), 성과연봉 월 15,400원 인상(2023년 9월부터 적용)을 잠정 합의하였다며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① 김이수 이사장이 1년 단위로 산정할 때, 이번 임금협약(안)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소요액은 1억원 정도로 보인다고 발언함
- ② 이현필 감사가 임금협약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건비 증가액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연동되어 있는 4대 보험 등의 부대 비용 증가액도 포함해서 추가 소요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채수학 재정예산팀장이 현재 산출된 추가 소요액 내에 4대 보험 등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소요액 중 한 6~8% 정도가 법정부담금에 해당될 것이라고 함. 이번 임금 협약 대상 교원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어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가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3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권구락 기획처장이 교수노동조합과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약 잠정 합의에 따라 기본급 1.7% 인상(2024년 1월부터 적용), 교육중심교원의 재임용 횟수에 따른 기본연봉 테이블 신설(2024년 1월부터 적용), 가족수당 월 10,000원 인상(2023년 9월부터 적용), 성과연봉 월 15,400원 인상(2023년 9월부터 적용)을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4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석승 교무처장이 202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경력 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한 15명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40조(임용)에 따라 신규임용 제청하고 2024. 2. 29.자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 9명을 교원인사규정 제51조(당연퇴직)에 따라 면직임용 제청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또한 감사원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

회신이 도달하지 않은 교원 1명에 대해 조건부 면직 임용으로 수정을 요청함

- 신규 임용 : 법사회대학 법학과 조교수 김정환 외 14명
- 면직 임용 : IT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 정일용 외 8명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이 교원 채용에 대한 특별한 방침이 있는지 질의하자 김춘성 총장이 현재 퇴직자로 인한 공석에 한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과의 사정 등으로 인해 비정년계열 교원 채용을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답변함. 또한 대학역량진단 폐지로 전임교원 충원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을 줄이고 정년계열 전임교원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 중이라고 함
- ② 임동윤 이사가 학과 운영 측면에서는 정년계열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이 적자 예산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년계열 교원과 비정년계열 교원 채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것을 당부함
- ③ 임동윤 이사가 공연예술무용과, 국어국문학부 등 최근 교원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함. 재조사 결과 해당 사안이 채용 비리로 판별될 시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재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대학에 요청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15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석승 교무처장이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요구) 등에 따라 교

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 징계를 제청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징계 제청 :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부교수 황태연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추가 보고사항 : 김현우 대외협력처장이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육 활성화 전략에 관해 추가 보고함

<정병준 이사가 19시 20분에 ZOOM 회의에서 퇴장함>

<김이수 이사장이 19시 22분에 정회를 선언함>

<김이수 이사장이 20시 01분 회의를 속개함>

28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조은정 기획감사팀장이 법인 및 산하기관의 감사 규정 제·개정을 이사회회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3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법인사무처/조선간호대학교)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① 조은정 기획감사팀장이 산하기관 자체 감사조직 운영에 따른 법인 감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② 박명희 총장이 직원 승진 정체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4호 의안.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박명희 총장이 2023학년도 제2회 추경액 10,586,315천원보다 149,966천원 증액된 10,736,281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위성욱 기획산학처장이 관·항·목별 편성 주요 사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함

논의사항

① 김이수 이사장이 건설중인자산 중 현장재현형 환경 구축 사업 설계 용역비에 대해 질의하자, 김상일 기획산학팀장이 본관 뒤편의 토지에 교사를 증축할 계획이 있어 해당 비용은 증축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용역비라고 함. 증축의 목적은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합 및 단과대학 승격을 대비하여 교사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증축이 완료되면 조선대학교 간호학과와 조선간호대학교 학생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습실이 확보될 것이라고 답변함

② 신윤숙 이사가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연구실의 이전 여부를 질의하자, 김상일 기획산학팀장이 아직 논의한 바 없으며 증축 이후 공간 조정과 동시에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함. 이에 박명희 총장이 통합이 되면 기존 조선간호대학교 재학생들이 조선대학교의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필요하다면 기존 자율학습실을 연구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통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첨언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 회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10,736,281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25호 의안.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박명희 총장이 연봉제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처장 보직 임용에 따른 관리업 무수당 지급으로 제26조(연봉) 조항에 관리업무수당을 추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제26조(연봉) 조항에 추가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6호 의안.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임용(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박명희 총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40조(임용)에 따라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의전담교원 1명과 사직원을 제출한 강의전담교원 1명

등 총 2명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임용 제청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면직 임용 : 간호학과 부교수 신호수 외 1명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7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권철 사업운영팀장이 충청남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장척~목현(국지도 96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 사로부터 보상에 대한 협의 요청이 들어온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산 155-2(1,297㎡)”에 해당하는 수익용 토지에 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처분하고자 한다며 처분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9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조은정 기획감사팀장이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중 일반업무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에서 변동없이 3,139,835천원, 수익사업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에서 변동없이 3,662,91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부 예산과목에 대해서 증감 조정하였다면서 증감 조정 사유 및 증감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3,139,835천원, 수익사업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3,662,913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30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조은정 기획감사팀장이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안) 중 일반업무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 3,139,835천원보다 4,807,450천원 증액된 7,947,285천원, 수익사업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 3,662,913천원보다 259,195천원 증액된 3,922,108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김선아 이사가 수익사업회계 투자와기타자산지출 중 출자금지출에 2.5억원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 사용 명목을 질의하자 조은정 기획감사팀장이 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시 지분 출자를 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라고 답변함
- ② 정권철 사업운영팀장이 새로이 설립되는 의약품 도매법인의 경우 기존 의약품 도매법

인과 합작 투자를 통해 설립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합작할 도매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③ 조성철 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만큼 의약품 도매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며 수익 다각화를 위해 의료기기, 소모품까지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함. 이어 이미 의약품 도매법인 합작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의료 법인, 대학 법인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함
- ④ 정세종 사무처장이 이권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각종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설립 진행 절차부터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 의뢰한 상태라고 하며, 조성철 이사가 제안한 대로 의약품 도매법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의료 법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언함
- ⑤ 임원 일동이 법률 분쟁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진행 단계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자 정세종 사무처장이 법률 자문이 완료되면 법률 자문 결과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중간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7,947,285천원, 수익사업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3,922,108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31호 의안.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세종 사무처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로 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신윤숙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였다며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신윤숙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함

【결 의 사 항】

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8,995,616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2.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7,445,269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9,756,813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7,588,967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5.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6,296,208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6.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4,539,653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7.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3학년도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3,961,012천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8.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3,704,149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9.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대학통합(안) 승인의 건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42,662,571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수정하여 가결하다.
11. 조선대학교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 참여(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산·구조문 대비표’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4.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15.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6. 조선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402,227,027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17.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8.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6,577,410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19.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외래 일반미수금(진료비) 대손상각 처리(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외래 일반미수금(진료비) 대손상각 처리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0.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8,233,267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21.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2.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3.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4.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10,736,281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25.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6.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7.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8.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9.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3,139,835천원, 수익사업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3,662,913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30.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7,947,285천원, 수익사업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3,922,108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31.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신윤숙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하다.

※ 정병준 이사는 23, 24, 25, 26, 27, 28, 29, 30, 31호 의안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음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4. 2. 6.

이 사장 김이수 김이수

이 사 김선아 김선아

이 사 임동윤 임동윤

이 사 신윤숙 신윤숙

이 사 이근우 이근우

이 사 박상규 박상규

이 사 정병준 정병준

이 사 조성철 조성철

감 사 김정호 김정호

감 사 이현필 이현필

■ 제12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교수노동조합,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

2023학년도 임금협약 합의서

조선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은 2023학년도 임금협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한다.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교육중심교원, 산학협력중심교원, 강의전담교원)의 기본연봉은 2024년 1월 부터 전년 대비 1.7% 인상하여 지급한다.
- 교육중심교원의 재임용 횟수에 따른 기본연봉은 2024년 1월부터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구분		현행(월액)	변경후(월액)	비고
부 교 수	신규임용	4,166,900	4,237,800	1.7% 인상
	첫 재임용	<신설>	4,343,800	신규임용 대비 2.5% 인상
	두 번째 재임용	<신설>	4,452,400	첫 재임용 대비 2.5% 인상
	세 번째 재임용	<신설>	4,675,100	두 번째 재임용 대비 5% 인상
	네 번째 재임용	<신설>	4,908,900	세 번째 재임용 대비 5% 인상

- 가족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인상한다.

부양가족		월지급액(변경 전)	월지급액(변경 후)
배우자		40,000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20,000원
자녀	첫째 자녀	20,000원	3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00,000원	110,000원

- 2023년 9월부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성과연봉은 NM등급을 기준으로 15,400원 인상한다.

2024년 2월 일

조선대학교 기획조정실장
권 구 락

교섭대표 노동조합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이 규 봉

■ 제13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9조(가족수당) ① 교직원의 가족수당은 <별표 8>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p> <p>②~⑧ <이하 생략></p>	<p>제9조(가족수당) ① 교직원의 가족수당은 <별표 8>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p> <p>②~⑧ <현행과 동일></p>
<p>제25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①~④ <이하 생략></p> <p>⑤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의 기본연봉 월액은 <별표 17-6>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⑥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의 성과연봉은 <별표 17-7>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임용 교원의 초임 성과연봉은 NM등급을 적용한다.</p> <p>⑦ <이하 생략></p>	<p>제25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①~④ <현행과 동일></p> <p>⑤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의 기본연봉 월액은 <별표 17-6>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⑥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의 성과연봉은 <별표 17-7>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임용 교원의 초임 성과연봉은 NM등급을 적용한다.</p> <p>⑦ <현행과 동일></p>
<p>제31조(보칙) ①~② <이하 생략></p> <p>③ 외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는 <별표 18>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p> <p>④~⑤ <이하 생략></p>	<p>제31조(보칙) 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외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는 <별표 18>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p> <p>④~⑤ <현행과 동일></p>
	<p>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p> <p>2. (교직원의 봉급에 대한 적용시기) 교직원 봉급에 대한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다.</p> <p>① 제25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⑤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의 기본연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② 제25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⑥ 비정년</p>

현 행		개 정																																	
<p>계열전임교원의 성과연봉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③ 제9조(가족수당)는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④ 제31조(보칙) ③ 외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별표 8> 가족수당 (종전 별표 적용)</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부 양 가 족</th> <th>월 지 급 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배 우 자</td> <td>40,000</td> <td></td> </tr> <tr> <td>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 <td>20,000</td> <td></td> </tr> <tr> <td rowspan="3">자녀</td> <td>첫째자녀</td> <td><u>20,000</u></td> </tr> <tr> <td>둘째자녀</td> <td><u>60,000</u></td> </tr> <tr> <td>셋째 이후 자녀</td> <td><u>100,000</u></td> </tr> </tbody> </table>		부 양 가 족	월 지 급 액	비 고	배 우 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u>20,000</u>	둘째자녀	<u>60,000</u>	셋째 이후 자녀	<u>100,000</u>	<p><별표 8> 가족수당</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부 양 가 족</th> <th>월 지 급 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배 우 자</td> <td>40,000</td> <td></td> </tr> <tr> <td>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 <td>20,000</td> <td></td> </tr> <tr> <td rowspan="3">자녀</td> <td>첫째자녀</td> <td><u>30,000</u></td> </tr> <tr> <td>둘째자녀</td> <td><u>70,000</u></td> </tr> <tr> <td>셋째 이후 자녀</td> <td><u>110,000</u></td> </tr> </tbody> </table>		부 양 가 족	월 지 급 액	비 고	배 우 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u>30,000</u>	둘째자녀	<u>70,000</u>	셋째 이후 자녀	<u>110,000</u>
부 양 가 족	월 지 급 액	비 고																																	
배 우 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u>20,000</u>																																	
	둘째자녀	<u>60,000</u>																																	
	셋째 이후 자녀	<u>100,000</u>																																	
부 양 가 족	월 지 급 액	비 고																																	
배 우 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u>30,000</u>																																	
	둘째자녀	<u>70,000</u>																																	
	셋째 이후 자녀	<u>110,000</u>																																	
<p><별표 17-6>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기본연봉표</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월 지급액</th> <th>연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교육 중심 교원</td> <td><u>3,529,700</u></td> <td><u>42,356,400</u></td> </tr> </tbody> </table>		구 분	월 지급액	연 지급액	교육 중심 교원	<u>3,529,700</u>	<u>42,356,400</u>	<p><별표 17-6>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기본연봉표</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월 지급액</th> <th>연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교육 중심 교원</td> <td><u>3,589,800</u></td> <td><u>43,077,600</u></td> </tr> </tbody> </table>		구 분	월 지급액	연 지급액	교육 중심 교원	<u>3,589,800</u>	<u>43,077,600</u>																				
구 분	월 지급액	연 지급액																																	
교육 중심 교원	<u>3,529,700</u>	<u>42,356,400</u>																																	
구 분	월 지급액	연 지급액																																	
교육 중심 교원	<u>3,589,800</u>	<u>43,077,600</u>																																	

현 행				개 정				
	부 교 수	<u>4,166,900</u>		<u>50,002,800</u>		신규 임용시 첫 재임용 후 두 번째 재임용 후	<u>4,237,800</u>	<u>50,853,600</u>
						부 교 수	<u>4,343,800</u>	<u>52,125,600</u>
						부 교 수	<u>4,452,400</u>	<u>53,428,800</u>
						부 교 수	<u>4,675,100</u>	<u>56,101,200</u>
연구 중심 산학 협력 중심 교원	조 교 수	<u>2,837,600</u>		<u>34,051,200</u>		조 교 수	<u>2,885,900</u>	<u>34,630,800</u>
	부 교 수	<u>3,267,900</u>		<u>39,214,800</u>		부 교 수	<u>3,323,500</u>	<u>39,882,000</u>
강의 전담 교원	조 교 수	신규 임용시	<u>2,270,700</u>	<u>27,248,400</u>	조 교 수	신규 임용시	<u>2,309,400</u>	<u>27,712,800</u>
		첫 재임용 후	<u>2,443,800</u>	<u>29,325,600</u>		첫 재임용 후	<u>2,485,400</u>	<u>29,824,800</u>
		두 번째 재임용 후	<u>2,616,900</u>	<u>31,402,800</u>		두 번째 재임용 후	<u>2,661,400</u>	<u>31,936,800</u>
		부 교 수	신규 임용 시	<u>2,837,600</u>		<u>34,051,200</u>	부 교 수	신규 임용 시
	부 교 수	첫 재임용 후	<u>2,922,720</u>	<u>35,072,640</u>	부 교 수	첫 재임용 후	<u>2,972,500</u>	<u>35,670,000</u>

현 행				개 정																																									
		두 번째 재임용 후	<u>3,014,400</u>	<u>36,172,800</u>			두 번째 재임용 후	<u>3,065,700</u>	<u>36,788,400</u>																																				
※ 산학협력중심교원은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학협력중심교원은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p><별표 17-7>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성과연봉표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0%;">조교수</th> <th style="width: 30%;">부교수</th> </tr> </thead> <tbody> <tr> <td>NS</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255,7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876,300</u></td> </tr> <tr> <td>NH</td> <td style="text-align: center;"><u>9,072,4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9,621,400</u></td> </tr> <tr> <td>NM</td> <td style="text-align: center;"><u>7,889,0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8,366,400</u></td> </tr> <tr> <td>NL</td> <td style="text-align: center;"><u>6,705,7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7,111,400</u></td> </tr> <tr> <td>NB</td> <td style="text-align: center;"><u>5,522,3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5,856,500</u></td> </tr> </tbody> </table>					구분	조교수	부교수	NS	<u>10,255,700</u>	<u>10,876,300</u>	NH	<u>9,072,400</u>	<u>9,621,400</u>	NM	<u>7,889,000</u>	<u>8,366,400</u>	NL	<u>6,705,700</u>	<u>7,111,400</u>	NB	<u>5,522,300</u>	<u>5,856,500</u>	<p><별표 17-7>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성과연봉표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0%;">조교수</th> <th style="width: 30%;">부교수</th> </tr> </thead> <tbody> <tr> <td>NS</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496,0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116,600</u></td> </tr> <tr> <td>NH</td> <td style="text-align: center;"><u>9,284,9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9,833,900</u></td> </tr> <tr> <td>NM</td> <td style="text-align: center;"><u>8,073,8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8,551,200</u></td> </tr> <tr> <td>NL</td> <td style="text-align: center;"><u>6,862,8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7,268,500</u></td> </tr> <tr> <td>NB</td> <td style="text-align: center;"><u>5,651,7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5,985,900</u></td> </tr> </tbody> </table>					구분	조교수	부교수	NS	<u>10,496,000</u>	<u>11,116,600</u>	NH	<u>9,284,900</u>	<u>9,833,900</u>	NM	<u>8,073,800</u>	<u>8,551,200</u>	NL	<u>6,862,800</u>	<u>7,268,500</u>	NB	<u>5,651,700</u>	<u>5,985,900</u>
구분	조교수	부교수																																											
NS	<u>10,255,700</u>	<u>10,876,300</u>																																											
NH	<u>9,072,400</u>	<u>9,621,400</u>																																											
NM	<u>7,889,000</u>	<u>8,366,400</u>																																											
NL	<u>6,705,700</u>	<u>7,111,400</u>																																											
NB	<u>5,522,300</u>	<u>5,856,500</u>																																											
구분	조교수	부교수																																											
NS	<u>10,496,000</u>	<u>11,116,600</u>																																											
NH	<u>9,284,900</u>	<u>9,833,900</u>																																											
NM	<u>8,073,800</u>	<u>8,551,200</u>																																											
NL	<u>6,862,800</u>	<u>7,268,500</u>																																											
NB	<u>5,651,700</u>	<u>5,985,900</u>																																											
<p><별표 18> 외국인 전임교원 보수표 (월지급액,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보수구분</th> <th style="width: 50%;">금 액</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u>2,403,400</u></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td> </tr> </tbody> </table>					보수구분	금 액	비 고	기본급	<u>2,403,400</u>		<이하 생략>			<p><별표 18> 외국인 전임교원 보수표 (월지급액,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보수구분</th> <th style="width: 50%;">금 액</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u>2,444,300</u></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td> </tr> </tbody> </table>					보수구분	금 액	비 고	기본급	<u>2,444,300</u>		<현행과 동일>																				
보수구분	금 액	비 고																																											
기본급	<u>2,403,400</u>																																												
<이하 생략>																																													
보수구분	금 액	비 고																																											
기본급	<u>2,444,300</u>																																												
<현행과 동일>																																													

제14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 신규임용 제청

연번	대학(원)	학부(과)	채용분야	대상자	직위	임용기간	구분
1	법사회대학	법학과	민사소송법	김정환	조교수	조교수 2024.3.1.~ 2027.2.28. 부교수 2024.3.1.~ 2029.2.28.	공개 채용
2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정보시스템	권보람	조교수		
3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전분야 (동역학 및 제어공학제 외)	함정균	조교수		
4	공과대학	스마트이동체 융합시스템공 학부	우주시스템	박길수	조교수		
5	IT융합대학	전자공학부	회로설계 또는 반도체 전분야	임상길	조교수		
6	IT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전분야	김성기	부교수		
7	미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운동처방	정구열	조교수		경력 경쟁 채용 등 (임상)
8	치과대학	치의학과	구강악안면 외과	김효준	조교수		
9	의과대학	의학과	소아청소년 과 - 소아과학 소아감염학	김가희	조교수		
10	의과대학	의학과	신경과 - 신경과학(뇌혈관질환)	황병욱	조교수		
11	의과대학	의학과	신경과 - 신경과학(뇌혈관질환)	이민아	조교수		
12	의과대학	의학과	신경외과 -	서종훈	조교수		

연번	대학(원)	학부(과)	채용분야	대상자	직위	임용기간	구분
			신경외과학 (척추신경외과)				
13	의과대학	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 임상병리학(진단검사의학)	김상미	조교수		
14	의과대학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마취통증의학(노인및 정형외과마취)	정화성	조교수		
15	의과대학	의학과	가정의학과 - 가정의학과	정유진	조교수		

□ 교원 면직 제청

- 정년 퇴직에 따른 면직

연번	대학(원)	학부(과)	직위	성명	정년/미정년	퇴직일자	비고
1	IT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	정일용	정년	2024.2.29	
2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이계원	정년	2024.2.29	
3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장완식	정년	2024.2.29	
4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홍진후	정년	2024.2.29	
5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보하니안	정년	2024.2.29	
6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안전상	정년	2024.2.29	
7	약학대학	약학과(2+4년제)	교수	우은란	정년	2024.2.29	

연번	대학(원)	학부(과)	직위	성명	정년/비정년	퇴직일자	비고
8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박찬국	정년	2024.2.29	
9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이승명	정년	2024.2.29	

- 의원 면직

연번	대학(원)	학부(과)	직위	성명	정년/비정년	퇴직일자	비고
1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조영국	정년	2024.2.29.	■ 감사원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 회신이 도달하지 않아 조건부 면직 임용

장기

장기

장기

■ 제15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내역

□ 교원 징계 제청

연번	대학(원)	학부(과)	직위	성명	비고
1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부교수	황태연	<p>■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10402호(2023. 12. 27.)]</p> <p>■ 통보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번호 : 2023형제41323호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결정일자 : 2023. 12. 20. - 결정내용 : 구약식



제17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규정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4조(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①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p> <p>② 2개 이상의 보직을 가진 사람은 상위 보직자의 판공비만 지급하며, 국책사업 등 사업수행에 따라 사업비에서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등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중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비에서 지급받는 수당의 합계액이 [별표 3]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의2(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으며, 매월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자는 상위보직자의 수당만 지급한다.</p>	<p>14조(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① [별표 3].....</p> <p>②..... [별표 3].....</p> <p>제 14조의2(관리업무수당)..... [별표 4].....</p>																																								
<p>[별표 3]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직명</th> <th>연간지급액</th> <th>월지급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병원장</td> <td>9,600,000</td> <td>800,000</td> <td></td> </tr> <tr> <td>부원장</td> <td>7,200,000</td> <td>600,000</td> <td></td> </tr> <tr> <td>부 장</td> <td>4,512,000</td> <td>376,000</td> <td></td> </tr> <tr> <td>팀장, 진료각과장</td> <td>3,648,000</td> <td>304,000</td> <td></td> </tr> </tbody> </table> <p>* 부장은 이에 준하는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의료질관리실장, 의료정보실장 포함</p>	보직명	연간지급액	월지급액	비고	병원장	9,600,000	800,000		부원장	7,200,000	600,000		부 장	4,512,000	376,000		팀장, 진료각과장	3,648,000	304,000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별표 3]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직명</th> <th>연간지급액</th> <th>월지급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병원장</td> <td>9,600,000</td> <td>800,000</td> <td></td> </tr> <tr> <td>부원장</td> <td>7,200,000</td> <td>600,000</td> <td></td> </tr> <tr> <td>부 장</td> <td>4,512,000</td> <td>376,000</td> <td></td> </tr> <tr> <td>팀장, 진료각과장</td> <td>3,648,000</td> <td>304,000</td> <td></td> </tr> </tbody> </table> <p>* <u>부원장은 이에 준하는 의생명연구원장 포함</u> * 부장은 이에 준하는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의료질관리실장, 의료정보실장 포함</p>	보직명	연간지급액	월지급액	비고	병원장	9,600,000	800,000		부원장	7,200,000	600,000		부 장	4,512,000	376,000		팀장, 진료각과장	3,648,000	304,000	
보직명	연간지급액	월지급액	비고																																						
병원장	9,600,000	800,000																																							
부원장	7,200,000	600,000																																							
부 장	4,512,000	376,000																																							
팀장, 진료각과장	3,648,000	304,000																																							
보직명	연간지급액	월지급액	비고																																						
병원장	9,600,000	800,000																																							
부원장	7,200,000	600,000																																							
부 장	4,512,000	376,000																																							
팀장, 진료각과장	3,648,000	304,000																																							

현행				개정			
[별표 4] 관리업무수당				[별표 4] 관리업무수당			
구분	등급	가	비고	구분	등급	가	비고
교원		병원장, 부원장. 진료부장 교육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의료질관리실장, 의료정보실장	진료 각 과장 병원에서 보직자 직책수행 판공비가 지급되는 자	교원		병원장, 부원장. <u>의생명연구원장,</u> 진료부장, <u>교육수련부장,</u>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의료질관리실장, 의료정보실장	진료 각 과장 병원에 서 보 직자 직책수 행판공 비가 지급되 는 자
직원		부장	팀장 이상 직원	직원		부장	팀장 이상 직원
지급액		월 봉급액의 9%	월 봉급액 의 9%	지급액		월 봉급액의 9%	월 봉급액 의 9%

■ 제19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외래 일반미수금(진료비) 대손상
각 처리 내역
□ 외래 일반미수 대손처리 내역

[일자 :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구분	환자 번호	환자 성명	진료과	진료 일자	미수 금액	미수 입금액	미수 잔액	비고
1	000041 8129	김정순	OS	2019- 12-26	2,910	0	2,910	
2	000041 8889	왕재수	OS	2019- 12-31	2,910	0	2,910	
3	000041 7030	국중하	CD	2020- 01-28	12,400		12,400	
4	000012 5770	최인순	PR	2020- 07-29	17,530	8,000	9,530	
5	000027 2385	고순자	OM	2020- 08-21	6,920	0	6,920	
6	000012 3571	배성현	PR	2020- 10-30	9,000	0	9,000	
7	000043 0569	임영숙	OS	2020- 11-13	3,300	0	3,300	
합계					54,970	8,000	46,970	

[일자 : 2013년 3월 1일 ~ 2014년 2월 28일]

구분	환자 번호	환자 성명	진료과	진료 일자	미수 금액	미수 입금액	미수 잔액	비고
1	000031 0067	구만규	CD	2013- 08-02	165,870	0	165,870	
			PC	2013- 07-11	7,020	0	7,020	
			CD	2013- 07-11	177,030	0	177,030	
2	000029 4284	서태봉	OS	2013- 09-05	312,150	0	312,150	
합계					662,070		662,070	

■ 제21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교직원의 봉급)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과 <별표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교직원의 봉급)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과 <별표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별표 8>과 같이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별표 8>과 같이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14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9>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 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 ⑦ <생 략>	제14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9>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 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계산) ① 연봉제 교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1.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5>, 성과연봉은 <별표 16>과 같이 지급한다. 2.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연봉은 <별표 17>과 같이 지급한다. 3. 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과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연봉은 <별표 18>과 같이 지급한다. 4. <생략> ② <생략>	제26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계산) ① 연봉제 교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1.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5>, 성과연봉은 <별표 16>과 같이 지급한다. 2.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연봉은 <별표 17>과 같이 지급한다. 3. 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과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연봉은 <별표 18>과 같이 지급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교직원 봉급에 대한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제4조(교직원의 봉급)는 2024년 1월 1일

현 행 **개 정**

〈별표 1〉 교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 급 액	호봉	봉 급 액
1	2,141,200	23	4,511,100
2	2,208,500	24	4,679,500
3	2,276,400	25	4,848,000
4	2,343,700	26	5,016,100
5	2,411,600	27	5,184,300
6	2,485,900	28	5,352,400
7	2,560,000	29	5,480,400
8	2,634,500	30	5,608,500
9	2,746,300	31	5,736,400
10	2,858,000	32	5,864,300
11	2,970,000	33	5,992,300
12	3,081,300	근 1	6,066,800
13	3,192,400	근 2	6,141,300
14	3,303,600	근 3	6,215,800
15	3,434,000	근 4	6,290,300
16	3,564,300	근 5	6,364,800
17	3,694,100	근 6	6,439,300
18	3,823,800	근 7	6,513,800
19	3,954,200	근 8	6,588,300
20	4,083,300	근 9	6,662,800
21	4,212,800	근10	6,737,300
22	4,342,300	총장	7,197,400

※ 근속가봉대상자는 74,500원의 근속가봉을 지급 하되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2〉 직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9급 (부서 기보)
1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1,517,800

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직급보조비) 및 제14조(가족수당)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26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계산)제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 급 액	호봉	봉 급 액
1	2,177,600	23	4,587,800
2	2,246,000	24	4,759,100
3	2,315,100	25	4,930,400
4	2,383,500	26	5,101,400
5	2,452,600	27	5,272,400
6	2,528,200	28	5,443,400
7	2,603,500	29	5,573,600
8	2,679,300	30	5,703,800
9	2,793,000	31	5,833,900
10	2,906,600	32	5,964,000
11	3,020,500	33	6,094,200
12	3,133,700	근 1	6,170,000
13	3,246,700	근 2	6,245,800
14	3,359,800	근 3	6,321,600
15	3,492,400	근 4	6,397,400
16	3,624,900	근 5	6,473,200
17	3,756,900	근 6	6,549,000
18	3,888,800	근 7	6,624,800
19	4,021,400	근 8	6,700,600
20	4,152,700	근 9	6,776,400
21	4,284,400	근10	6,852,200
22	4,416,100	총장	7,319,800

※ 근속가봉대상자는 75,800원의 근속가봉을 지급 하되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2〉 직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9급 (부서 기보)
1	3,836,000	3,460,900	2,966,200	2,650,700	2,186,800	1,962,300	1,805,100	1,770,800	1,593,700

현행										개정									
2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1,538,600	3,978,300	3,588,900	3,087,300	2,757,800	2,288,500	2,051,800	1,863,600	1,789,800	1,610,800	
3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1,573,400	4,122,500	3,720,800	3,210,400	2,869,100	2,393,400	2,146,600	1,924,200	1,821,500	1,639,300	
4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1,622,100	4,268,100	3,853,600	3,336,400	2,984,600	2,500,600	2,246,700	2,015,700	1,865,700	1,679,100	
5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1,684,800	4,415,700	3,988,600	3,464,100	3,103,200	2,611,000	2,349,400	2,110,800	1,922,300	1,730,000	
6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1,763,500	4,563,500	4,124,900	3,593,100	3,224,200	2,724,500	2,455,000	2,208,200	1,992,800	1,793,500	
7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2,790,500	2,518,700	2,267,400	2,046,500	1,841,800	4,713,300	4,262,200	3,723,000	3,347,000	2,838,300	2,561,300	2,305,900	2,081,300	1,873,100	
8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2,903,800	2,623,800	2,359,800	2,130,400	1,917,300	4,862,800	4,401,100	3,853,900	3,471,400	2,952,500	2,668,400	2,399,900	2,166,600	1,949,900	
9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200	2,210,700	1,989,900	5,013,400	4,540,500	3,985,300	3,596,200	3,067,000	2,770,200	2,489,300	2,248,400	2,023,400	
1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800	2,819,500	2,531,200	2,288,000	2,059,900	5,163,300	4,679,600	4,116,400	3,721,900	3,174,400	2,867,700	2,574,300	2,326,600	2,094,200	
11	5,226,200	4,738,800	4,177,300	3,775,100	3,221,900	2,909,600	2,612,000	2,361,700	2,125,500	5,315,400	4,819,800	4,248,300	3,839,300	3,276,600	2,959,900	2,656,400	2,401,800	2,161,600	
12	5,379,900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900	2,690,300	2,435,000	2,191,800	5,471,500	4,964,400	4,372,100	3,952,600	3,376,600	3,049,200	2,736,600	2,476,700	2,228,800	
13	5,534,600	5,013,300	4,414,000	3,992,200	3,412,500	3,082,200	2,766,600	2,505,500	2,254,900	5,628,600	5,098,800	4,489,000	4,060,300	3,470,700	3,134,700	2,813,700	2,547,800	2,293,000	
14	5,674,600	5,136,600	4,520,700	4,090,800	3,500,600	3,162,200	2,839,800	2,573,300	2,316,900	5,771,700	5,223,300	4,597,100	4,160,600	3,560,000	3,216,600	2,887,700	2,617,300	2,355,500	
15	5,803,700	5,249,200	4,621,100	4,183,300	3,584,200	3,239,900	2,908,200	2,638,600	2,374,900	5,902,800	5,338,400	4,699,000	4,255,500	3,645,300	3,294,400	2,958,800	2,683,300	2,415,500	
16	5,922,000	5,354,700	4,716,500	4,271,800	3,663,300	3,312,200	2,975,500	2,701,100	2,431,800	6,022,900	5,445,600	4,796,300	4,344,400	3,725,600	3,368,700	3,026,600	2,747,600	2,472,200	
17	6,031,000	5,452,700	4,804,200	4,353,300	3,738,800	3,381,500	3,038,200	2,763,300	2,486,900	6,133,000	5,545,800	4,885,400	4,427,700	3,802,300	3,439,900	3,090,300	2,810,300	2,529,200	
18	6,130,500	5,543,800	4,886,300	4,431,800	3,810,300	3,448,800	3,099,900	2,820,600	2,538,900	6,234,100	5,638,900	4,969,500	4,507,800	3,874,400	3,507,000	3,152,400	2,868,600	2,581,700	
19	6,222,000	5,628,900	4,963,400	4,505,300	3,877,800	3,511,200	3,157,600	2,877,700	2,589,900	6,328,200	5,723,000	5,047,600	4,581,900	3,943,500	3,570,100	3,211,500	2,926,600	2,633,300	
20	6,306,400	5,707,000	5,035,500	4,573,800	3,941,300	3,571,700	3,213,900	2,930,200	2,637,900	6,413,300	5,804,100	5,120,700	4,651,000	4,008,600	3,631,200	3,268,700	2,980,600	2,682,400	
21	6,383,100	5,780,000	5,102,600	4,638,900	4,002,800	3,628,200	3,266,400	2,981,700	2,683,900	6,491,400	5,878,200	5,188,800	4,717,100	4,070,700	3,689,800	3,322,800	3,032,700	2,729,500	
22	6,453,500	5,847,000	5,165,700	4,699,000	4,059,300	3,681,700	3,317,900	3,030,200	2,727,900	6,563,500	5,947,300	5,252,900	4,778,200	4,128,800	3,744,900	3,374,900	3,081,800	2,773,600	
23	6,517,900	5,910,000	5,224,800	4,756,100	4,113,800	3,734,200	3,366,400	3,076,700	2,769,900	6,628,600	6,010,400	5,312,000	4,837,300	4,183,900	3,797,000	3,423,000	3,129,900	2,816,700	
24	6,570,500	5,968,000	5,279,900	4,809,200	4,165,300	3,783,700	3,413,900	3,121,200	2,809,900	6,682,700	6,070,500	5,369,100	4,891,400	4,235,000	3,847,100	3,471,100	3,174,000	2,857,800	
25	6,620,800	6,016,000	5,330,000	4,860,300	4,213,800	3,830,200	3,457,400	3,164,700	2,847,900	6,733,800	6,118,600	5,421,200	4,943,500	4,285,100	3,895,200	3,516,200	3,217,100	2,896,900	
26		6,062,000	5,373,100	4,908,200	4,260,300	3,875,800	3,500,300	3,202,200	2,882,900		6,165,700	5,465,300	4,991,400	4,332,500	3,941,300	3,560,300	3,256,200	2,931,000	
27		6,104,000	5,413,100	4,947,200	4,303,300	3,913,800	3,536,400	3,235,700	2,911,900		6,208,800	5,505,400	5,032,500	4,377,600	3,979,400	3,596,400	3,290,300	2,961,100	
28			5,451,000	4,985,100	4,340,200	3,948,300	3,571,400	3,267,700	2,940,900			5,544,500	5,070,600	4,414,700	4,015,700	3,632,400	3,322,400	2,990,200	

현행										
29				5,020, 700	4,375, 100	3,982, 800	3,604, 100	3,298, 100	2,968, 200	
30				5,054, 700	4,409, 100	4,015, 500	3,635, 800	3,328, 000	2,995, 200	
31				4,440, 600	4,046, 200	3,666, 600	3,357, 400	3,021, 600		
32				4,470, 300						

개정										
29				5,106, 100	4,449, 500	4,050, 500	3,665, 400	3,354, 200	3,018, 700	
30				5,140, 600	4,484, 100	4,083, 800	3,697, 600	3,384, 600	3,046, 100	
31				4,516, 100	4,115, 000	3,728, 900	3,414, 500	3,073, 000		
32				4,546, 300						

<별표 8>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지급구분	월지급액(원)	비고
직원	6급 이상	175,000	
	7급	165,000	
	8급, 9급, 9급부서기보	155,000	

<별표 8>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지급구분	월지급액(원)	비고
직원	6급 이상	185,000	
	7급	180,000	
	8급, 9급, 9급부서기보	175,000	

<별표 9> 가족수당

(단위 : 원)

지급대상	부양가족	월지급액	비고	
교직원	배우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20,000	
		둘째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별표 9> 가족수당

(단위 : 원)

지급대상	부양가족	월지급액	비고	
교직원	배우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30,000	
		둘째자녀	70,000	
		셋째 이후 자녀	110,000	

<별표 15> 정년계열 전임교원 기본연봉표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원)	비고
교수	48,491,880	4,040,990	
부교수	37,686,720	3,140,560	
조교수	35,382,000	2,948,500	

<별표 15> 정년계열 전임교원 기본연봉표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원)	비고
교수	49,316,280	4,109,690	
부교수	38,327,400	3,193,950	
조교수	35,983,560	2,998,630	

현 행				개 정																																											
<p><별표 17>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기본연봉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봉액(원)</th> <th>월지급액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부교수</td> <td>42,405,480</td> <td>3,533,790</td> <td></td> </tr> <tr> <td>조교수</td> <td>38,170,920</td> <td>3,180,91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부교수	42,405,480	3,533,790		조교수	38,170,920	3,180,910		<p><별표 17>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기본연봉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봉액(원)</th> <th>월지급액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부교수</td> <td>43,126,368</td> <td>3,593,864</td> <td></td> </tr> <tr> <td>조교수</td> <td>38,819,820</td> <td>3,234,985</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부교수	43,126,368	3,593,864		조교수	38,819,820	3,234,985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부교수	42,405,480	3,533,790																																													
조교수	38,170,920	3,180,910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부교수	43,126,368	3,593,864																																													
조교수	38,819,820	3,234,985																																													
<p><별표 18> 산학협력중점교원 보수표</p> <p>가. 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봉액(원)</th> <th>월지급액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교 수</td> <td>50,947,320</td> <td>4,245,610</td> <td></td> </tr> <tr> <td>부교수</td> <td>46,664,280</td> <td>3,888,690</td> <td></td> </tr> <tr> <td>조교수</td> <td>42,405,480</td> <td>3,533,790</td> <td></td> </tr> <tr> <td>조교수(2년 미만)</td> <td>38,170,920</td> <td>3,180,91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교 수	50,947,320	4,245,610		부교수	46,664,280	3,888,690		조교수	42,405,480	3,533,790		조교수(2년 미만)	38,170,920	3,180,910		<p><별표 18> 산학협력중점교원 보수표</p> <p>가. 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봉액(원)</th> <th>월지급액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교 수</td> <td>51,813,480</td> <td>4,317,790</td> <td></td> </tr> <tr> <td>부교수</td> <td>47,457,600</td> <td>3,954,800</td> <td></td> </tr> <tr> <td>조교수</td> <td>43,126,440</td> <td>3,593,870</td> <td></td> </tr> <tr> <td>조교수(2년 미만)</td> <td>38,819,880</td> <td>3,234,99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교 수	51,813,480	4,317,790		부교수	47,457,600	3,954,800		조교수	43,126,440	3,593,870		조교수(2년 미만)	38,819,880	3,234,990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교 수	50,947,320	4,245,610																																													
부교수	46,664,280	3,888,690																																													
조교수	42,405,480	3,533,790																																													
조교수(2년 미만)	38,170,920	3,180,910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교 수	51,813,480	4,317,790																																													
부교수	47,457,600	3,954,800																																													
조교수	43,126,440	3,593,870																																													
조교수(2년 미만)	38,819,880	3,234,990																																													
<p>나.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봉액(원)</th> <th>월지급액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조교수</td> <td>30,420,000</td> <td>2,535,0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조교수	30,420,000	2,535,000		<p>나.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봉액(원)</th> <th>월지급액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조교수</td> <td>30,937,200</td> <td>2,578,1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조교수	30,937,200	2,578,100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조교수	30,420,000	2,535,000																																													
구분	연봉액(원)	월지급액 (원)	비 고																																												
조교수	30,937,200	2,578,100																																													

제22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
□ 신규임용 제청

구분	소속학과	초빙분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정년계열 (연봉제)	자동화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정윤진	1981.01.15.	조교수	2024.03.01.	2024.03.01.~ 2027.02.28.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김경숙	1965.01.07.	조교수	2024.03.01.	2024.03.01.~ 2027.02.28.

□ 면직임용 제청

연 번	소속학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최초임용일	면직일	비고
1	미래자동차학부	이재득	1958.12.15	교수	1994.04.01	2024.02.29.	정년 퇴직

■ 제23호 의안 별첨 자료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해당 부분만 발취></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임원</p> <p>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p><1 ~ 5호 기재 생략></p> <p><6호 신설></p> <p>제110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와 병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u>별표 1</u> 내지 <u>별표 3</u>과 같다.</p> <p><별표1> 법인, 조선대학교, <u>조선간호대학교</u>, 조선이공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단위: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법인·대학 별</th> <th rowspan="2">직급·직군</th> <th colspan="8">직급</th> <th rowspan="2">합계</th> </tr> <tr> <th>2급</th> <th>3급</th> <th>4급</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부서 기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조선 간호 대학 교</td> <td>일반 직</td> <td></td> <td></td> <td></td> <td>2</td> <td>3</td> <td>2</td> <td>3</td> <td>2</td> <td rowspan="3">14</td> </tr> <tr> <td>행정 직</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술 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소 계</td> <td>0</td> <td>1</td> <td>1</td> <td>2</td> <td>3</td> <td>2</td> <td>3</td> <td>2</td> <td>14</td> </tr> </tbody> </table> <p>※ 별표 1 해당부분(조선간호대학교)만 발취</p>	법인·대학 별	직급·직군	직급								합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부서 기보)	조선 간호 대학 교	일반 직				2	3	2	3	2	14	행정 직	-	1	1						기술 직	-	-	-						소 계		0	1	1	2	3	2	3	2	14	<p><기재 외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임원</p> <p>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p><현행과 같음></p> <p>6. 산하기관의 자체 감사 사무를 감리 하는 일</p> <p>제110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와 병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u>별표 1</u> 내지 <u>별표 3</u>과 같다.</p> <p><별표1> 법인, 조선대학교, <u>조선간호대학교</u>, 조선이공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단위: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법인·대학 별</th> <th rowspan="2">직급·직군</th> <th colspan="8">직급</th> <th rowspan="2">합계</th> </tr> <tr> <th>2급</th> <th>3급</th> <th>4급</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부서 기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조선 간호 대학 교</td> <td>일반 직</td> <td></td> <td></td> <td></td> <td>2</td> <td>4</td> <td>3</td> <td>2</td> <td>1</td> <td rowspan="3">14</td> </tr> <tr> <td>행정 직</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술 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소 계</td> <td>0</td> <td>1</td> <td>1</td> <td>2</td> <td>4</td> <td>3</td> <td>2</td> <td>1</td> <td>14</td> </tr> </tbody> </table> <p>※ 별표 1 해당부분(조선간호대학교)만 발취</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p>	법인·대학 별	직급·직군	직급								합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부서 기보)	조선 간호 대학 교	일반 직				2	4	3	2	1	14	행정 직	-	1	1						기술 직	-	-	-						소 계		0	1	1	2	4	3	2	1	14
법인·대학 별			직급·직군	직급								합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부서 기보)																																																																																																														
조선 간호 대학 교	일반 직				2	3	2	3	2	14																																																																																																													
	행정 직	-	1	1																																																																																																																			
	기술 직	-	-	-																																																																																																																			
소 계		0	1	1	2	3	2	3	2	14																																																																																																													
법인·대학 별	직급·직군	직급								합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부서 기보)																																																																																																														
조선 간호 대학 교	일반 직				2	4	3	2	1	14																																																																																																													
	행정 직	-	1	1																																																																																																																			
	기술 직	-	-	-																																																																																																																			
소 계		0	1	1	2	4	3	2	1	14																																																																																																													

■ 제25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10조(관리업무수당) 총장, 처(단)장에 대하여는 월 봉급액의 4.5%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p> <p>제12조(보직자직책수행판공비) 보직자에게 직책 수행과 품위 유지를 위하여 [별표 7]과 같이 판공비를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최상위 보직에 해당하는 판공비만 지급한다.</p> <p>제26조(연봉) <① ~ ②항 기재 생략> ③ 연봉은 이 규정의 제2장 봉급 및 제3장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조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제14조 가족수당, 제18조 급식비 및 제21조 기타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관리업무수당) 현행과 같음</p> <p>제12조(보직자직책수행판공비) 현행과 같음</p> <p>제26조(연봉) <현행과 같음> ③ 연봉은 이 규정의 제2장 봉급 및 제3장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u>제10조 관리업무수당</u>, 제12조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u>제14조 가족수당</u>, <u>제16조 육아휴직수당</u>, 제18조 급식비 및 제21조 기타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p>

■ 제26호 의안 별첨 자료 :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

□ 면직임용 제청

학과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제청 사유	퇴직 예정일	비 고
간호학과	부 교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	신 효 수	1958.11.23.	2016.03.01.	계약 만료	2024. 02.29.	2023.11.23. (만 65세)
간호학과	조 교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	강 희	1987.08.16.	2021.03.01.	의원 면직	2024. 02.29.	



■ 제27호 의안 별첨 자료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내역

□ 처분할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손실보상액(원) (감정평가액)	비고
토지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산155-2	임	1,297	41,633,700	공시지가의 약 7배

□ 처분 사유

- 상기 표시 부동산은 충청남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장척~목현(국지도96호) 도로건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로부터 보상에 대한 협의 요청이 들어온 상태임.
- 처분예정 금액은 2023년 07월 기준 공시지가의 약 7배 수준임.
- 이에, 상기 표시 부동산을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처분하고자 함.



■ 제28호 의안 별첨 자료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감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해당 부분만 발췌></p> <p>제7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업무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p> <p><조 신설></p> <p><이하 기재 생략></p>	<p><기재 외 현행과 같음></p> <p>제7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업무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p> <p><u>제7조의2(규정의 제·개정) 법인 및 산하기관의 감사 관련 규정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p> <p><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부 칙</p> <p>(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p>